

2003年度第1回忠清北道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2003. 5. 26.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目 次

I.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編成方向

1. 豫算案編成方向
2. 豫算案編成基準

II.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의 主要內容

1. 豫算總則
2. 歲入歲出豫算
3. 修正豫算

III. 檢討意見

1. 一般會計歲入豫算
2. 一般會計歲出豫算
3. 特別豫算
4. 食品振興基金豫算
5. 修正豫算

I.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 編成方向

1. 豫算案 編成方向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계상
- 경상경비는 필수 불가피한 경비 계상
- 「현안사업」 및 마무리 위주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2. 豫算案 編成基準

가. 세입예산

-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계상
- 2003 당초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추가 또는 변동내시분 계상

나. 세출예산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계상
- 정부지원사업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 경상사업비는 여건변동이 따른 추가소요액 계상
- 현안으로 대두된 투자가 긴요한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 Biotopia 충북건설 및 시·군 순방시 건의사업비 계상

II.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의 主要内容

1. 豫算總則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	제1회추경	비 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조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47,425,100	51,124,900	
○ 일반회계	35,530,100	38,197,000	
○ 특별회계	11,895,000	12,927,900	
- 공기압특별회계	9,055,000	9,844,000	
- 기타특별회계	2,840,000	3,083,900	
제3조 예비비			
○ 일반회계	21,033,033	13,635,012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273,135,706	299,459,414	
제2조 업무예정량			
○ 지방채발행 계획	50,000,000	50,000,000	
○ 지방채원리금 총액	39,993,293	39,993,293	
○ 기금융자계획 총액	80,000,000	80,000,000	
○ 융자금회수 총액	22,797,705	22,797,705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 사업수익	10,985,906	10,999,068	
○ 사업비용	10,413,730	10,412,730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 자본적수입	67,831,800	67,831,800	
○ 자본적지출	262,721,976	289,045,684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50,000,000	50,000,000	
제6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채상환금)	40,079,595	40,079,595	

2. 歲入歲出豫算

가. 예산안 규모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2,732억 85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인

888억 7,36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308억 1,94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인

344억 1,96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충청북도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8%인 1,232억 9,331만원이 증가한

1조 7,040억 2,799만원임.

《세입세출예산안규모》

(단위:천원, %)

구 분	당초예산	제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580,734,680	1,704,027,990	123,293,310	7.8
○ 일반회계	1,184,334,946	1,273,208,560	88,873,614	7.5
○ 특별회계	396,399,734	430,819,430	34,419,696	8.7
- 공기업특별회계	301,783,374	328,107,082	26,323,708	8.7
- 기타특별회계	94,616,360	102,712,348	8,095,988	8.6

나. 일반회계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초과징수분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94억 6,05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294억 1,30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7.5%인 888억 7,36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항목별 당초예산 대비 증가사항을 보면

- 세외수입증
 - 순세계잉여금은 252.7%인 556억 341만 7천원이 증가한 776억 341만 7천원
 - 이월금은 2억 7,388만 1천원
 - 부담금은 1.6%인 1억 1,980만 1천원이 증가한 77억 1,402만 6천원
 - 잡수입은 17.3%인 34억 6,342만 6천원이 증가한 234억 7,25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의존수입증
 - 지방교부세는 6.8%인 181억 5,917만 4천원이 증가한 2,869억 9,430만 7천원
 - 지방양여금은 4.4%인 58억 3,535만 3천원이 증가한 1,393억 2,618만 3천원
 - 보조금은 1.3%인 54억 1,856만 2천원이 증가한 4,312억 4,646만원을

각각 증액 제상하였음.

〈표1〉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

구 분	당초예산	제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 율
○ 지방세	285,880,000	285,880,000	0	-
- 보통세	196,953,000	196,953,000	0	-
- 목적세	83,137,000	83,137,000	0	-
- 과년도수입	5,790,000	5,790,000	0	-
○ 세외수입	70,301,085	129,761,610	59,460,525	16.7
- 경상적세외수입	16,033,996	16,033,996	0	-
- 임시적세외수입	54,267,089	113,727,614	59,460,525	109.6
• 재산매각수입	2,513,750	2,513,750	0	0
• 순세제잉여금	22,000,000	77,603,417	55,603,417	252.7
• 이월금	0	273,881	273,881	-
• 융자금원금수입	2,000,000	2,000,000	0	0
• 부담금	7,594,225	7,714,026	119,801	1.6
• 잡수입	20,009,114	23,472,540	3,463,426	17.3
• 과년도수입	150,000	150,000	0	0
○ 지방교부세	268,835,133	286,994,307	18,159,174	6.8
○ 지방양여금	133,490,830	139,326,183	5,835,353	4.4
○ 보조금(국고등)	425,827,898	431,246,460	5,418,562	1.3
○ 지방채	0	0	0	0
총 계	1,184,334,946	1,273,208,560	88,873,614	7.5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추가로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경상비는 필수불가피한 경비를 제상하였고,
투자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를 중점 제상하였음.

주요 경비로는

중평군 설치에 따른 개청준비 경비,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시설경비 사업비, 청남대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비 시·군 지역현안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7.5% 증가한 1조 2,732억 856만원의 규모로 편성 하였음.

○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 일반행정비는 12.5% 증가한 1,799억 3,271만 2천원
- 사회개발비는 5.2% 증가한 4,354억 876만 3천원
- 경제개발비는 8.4% 증가한 4,647억 4,911만 1천원
- 민방위비는 3.3% 증가한 655억 9,523만 9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8.0% 증가한 1,275억 2,273만 5천원임.

○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8.1%, 지역경제개발비 21.0%, 교통 관리비 100.4%, 민방위관리비 158.0%가 각각 증가하였고, 사회보장비 1.2%, 지방채상환 5.9%, 예비비 35.2%가 각각 감소 하였음

〈표2〉 《일반회계 기능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장 관 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증 감 율	
		%		%	금 액	%
합 계	1,184,334,946	100	1,273,208,560	100	88,873,614	7.5
1000 일반행정비	159,961,507	13.5	179,932,712	14.1	19,971,205	12.5
1100입법및선거관계	4,436,785	0.4	4,541,126	0.3	104,341	2.4
1200일반행정비	155,524,722	13.1	175,391,586	13.8	19,866,864	12.8
2000 사회개발비	413,907,039	34.9	435,408,763	34.2	21,501,724	5.2
2100교육및문화비	62,465,554	5.3	70,006,055	5.5	7,540,501	12.1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10,812,103	9.3	114,227,699	9.0	3,415,596	3.1
2300사회보장비	194,621,489	16.4	192,252,594	15.1	△2,368,895	△1.2
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46,007,893	3.9	58,922,415	4.6	12,914,522	28.1
3000 경제개발비	428,883,847	36.2	464,749,111	36.5	35,865,264	8.4
3100농수산개발비	136,901,815	11.6	150,228,689	11.8	13,326,874	9.7
3200지역경제개발비	64,976,501	5.5	78,604,258	6.2	13,627,757	21.0
3300국토지원보존개발비	223,052,459	18.8	227,993,715	17.9	4,941,256	2.2
3400교통관리비	3,953,072	0.3	7,922,449	0.6	3,969,377	100.4
4000 민방위비	63,481,071	5.4	65,595,239	5.2	2,114,168	3.3
4100민방위관리비	463,281	-	1,195,176	0.1	731,895	158.0
4200소방관리비	63,017,790	5.4	64,400,063	5.1	1,382,273	2.2
5000 지원및기타경비	118,101,482	10.0	127,522,735	10.0	9,421,253	8.0
5100지방채상환	10,466,809	0.9	9,853,783	0.8	△613,026	△5.9
5200제지출금	-	-	276,219	-	276,219	-
5300교부금	86,601,640	7.3	103,757,721	8.1	17,156,081	19.8
5400예비비	21,033,033	1.8	13,635,012	1.1	△7,398,029	△35.2

다.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8.7%인 344억 1,969만 6천원 증가한 4,308억 1,943만원으로 편성됨.

〈표3〉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특별회계예산안》

(단위:천원, %)

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396,399,734	430,819,430	34,419,696	8.7
○ 공기업특별회계	301,783,374	328,107,082	26,323,708	8.7
- 공영개발	28,647,668	28,647,668	-	-
- 지역개발기금	273,135,706	299,459,414	26,323,708	9.6
○ 기타특별회계	94,616,360	102,712,348	8,095,988	8.6
- 충북과학대학운영	5,116,572	5,502,415	385,843	7.5
- 의료보호기금	80,594,416	81,160,769	566,353	0.7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6,392,408	12,650,466	6,258,058	97.9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27,000	28,038	1,038	3.8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485,964	3,370,660	884,696	35.6

3. 修正豫算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청남대관광명소화발전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III. 檢討意見

1. 一般會計 歲入豫算

가. 순세계 잉여금

- 당초예산편성시기(10월), 회계연도종료(12월말), 출납폐쇄기한 도래(익년도 2월말)등 시차는 있으나
2002년도 재정분석결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220억원을 계상하고 금회추경에 556억원을 계상한 것은(당초예산의 2.5배)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 재정분석에 지나치게 소극적, 안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지
-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밀분석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투자 시기를 앞당겼다면 사업의 조기완공, 투자지연에 따른 물가인상 등 추가 재정 수요부담 감소, 주민 서비스 제공시기 단축, 업무여건개선 등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특별교부세 사업

- 주민자치센터 설치(5억 4천만원), 방독면 보급(3,100만원)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 및 현실여건상 일선단체장 및 현장에서 부정적 사업으로 예산투자의 외론이 제기됨으로 다른 사업용도로 지원되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집행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향후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양여금 및 보조금 사업

사회조류상 투자가 적극 요청되고 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더라도 다수를 위하여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예컨대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납골당 등의 사업예산과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 기피시설 사업예산은 중앙과 협의 기피시설 유치지역 주민들은 핵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선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여 주민기피시설에서 주민 선호시설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재원대책이 보장되는 시설 및 사업인수

중앙 또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인수할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확약이나 보장을 받은 후에 인수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과 도간, 도와 타 기관간 시설부지 및 시설을 매입할 때는 대금 정산기간을 최대한 연장(20~30년) 균분 결제하는 등 과도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一般會計 歲出豫算

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업의 추정반영

- 법정필수경비(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등)
- 사업추진에 불가결한 경비(설계비, 부대비)
-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필요한 경비
(청사시설 개선비, 사무용기기 구입비, 차량취득비)

-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제공 효율을 높이고 사업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소액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나.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이 재계상 및 증액요구한 3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재관성 결여, 설명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는바

이들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인 등에 대한 신규·시험예산의 지원

- 비록 소액의 사업비일지라도 민간인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예산지원으로 미칠 파장 등을 감안 문제가 있다면 특별교부세 사업이든 국고보조 사업일지라도 중앙에 건의 사업용도를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하여야 할 것이며,

- 금회 추경에 요구한 인삼 길항 미생물 지원사업비, 어머니 자율 방법대 급식비지원, 축사 에어쿨 설치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은

- 봉사단체의 성격
- 인삼농가의 소득수준 및 인삼조합의 재정여건
- 규모가 큰 한우 축산 농가의 소득수준
-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속성 및 회비를 받는 상공회의소의 재정운영 등을 감안하고

- 향후 다른 봉사단체, 다른 작목의 농가, 다른 종류의 축산

농가, 비전자 상거래업체 등의 지원요구시의 형평성 및 거부논리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 정액보조단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저촉되고, 사정이 어렵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원칙을 벗어나서 지원하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지원 받는다는 식의 의태심이 생기고, 다른 단체와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 사회단체에서 시설장비예산 지원요청시는 시설 후 또는 장비 구입 후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 추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회단체 시설장비 지원예산은 예산지원전에 각서를 받는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생활체육협의회 등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예년에 지원하지 않은 인건비까지 지원요구하거나 급격히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충청북도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8억원인 바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마. 행사성 예산

- 민선자치 이후 행사성 예산의 급증에 대한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질책과 비판을 받아 왔음.
-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행사성 예산을 재계상하거나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요구한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바. 시설사업 예산

시설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효율성을 감안 사업투자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여야 하는데 완공한지 1년도 안돼서 긴급히 시설구조를 개조하거나 추가시설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소방본부 증축
- 청주 서부소방서 칸막이 공사 및 계단 차양막 설치
- 청주 동부소방서 컨테이너 설치
- 충주 소방서 선박계류장 및 주덕파출소 내부구조 변경
- 농업기술원 연구동 환코일 설치 및 배관시설

사. 예산지원의 인센티브제 적극도입

- 금회 추경예산에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에서 우승한 보은 노인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써
- 향후 단체, 민간인, 사군, 부서별 예산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 중평출장소 및 중평군 설치 관련예산

- 중평출장소 예산중 지방채 3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현재 중평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금년도 사업예산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으나 중평군 출범에 대비하여

금회 추경에 청사 시설비 및 차량취득비 등을 계상 요구한 바

- 충청북도에서 금회 추경에 다뤄야 할 적법성이 있는지
- 충청북도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
그 만큼 중앙지원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特別會計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263억원의 증액사유
-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계약보증금 위약금 4,700만원 및 대학
대의 홍보비 1억 8,669만원 계상
- 의료급여 사업 도비부담금(5,800만원)과 시군부담금(3억
9,800만원)감액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의
차이(7억 1,900만원)가 발생한 사유
- 농어촌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62억원) 증액사유

4. 食品振興基金豫算

- 대물림 전통음식 제송업소 특집방송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계획과
-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보다 지출초과가 약 10억원인 바
설명이 요구됨.

5. 修正豫算

금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청남대 관광명소화 발전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e)